

협의부서 안내사항

(신당동 1000-2번지 일원 교육연구시설 증축 공사)

1. 기후환경과[붙임 1]

건축주	소재지	협의내용	검토결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당동 1000-2	정화조 설치 관련	해당없음
		절수설비 설치 관련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환경 표지 인증서를 제출할 것.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공중 화장실 설치 대상에 해당함. - 같은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여성 대변기 수가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건물 1개동 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바닥면적의 합이 1천㎡이상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

2. 건설과[붙임 2]

구분	대지위치	신청인	협의의견	비고
건축허가 (증축)	신당동 1000-2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 배수설비 설치 관련 협의: 해당없음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 부과대상 - 개산액 55,009,510원 정도 - 사용승인 전 납부요망 - 최종 사용승인(준공) 전 면적, 사용용도, 기준 단가가 달라질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 [준공(예정일) 시점 적용] ※ 건축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후 사용승인 신청	

3. 문화관광과

주소	건축주	검토결과
신당동 1000-2	학교법인계명대학교이사장	○ 매장 문화재 조사 관련: 사업시행 -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하나, 건설공사 시행중 매장유산 발견 시

		<p>에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발견신고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p> <p>- 「신당동 1000-2 층축」 대상은 市 지정민속 문화유산 '신당동 석장승'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3구역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달서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시어 제출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 공정이 발생할 시 변경된 계획과 함께 반드시 다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4. 어르신장애인과

문서번호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적합성 확인 결과
건축과-15674 (2025.4.8.)	건축허가 (증축)	신당동 1000-2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이사장	교육연구시설 (학교)	적합

5. 디지털정보과[붙임 3]

건축주	건축물 소재지	용도 (층수)	공종	검토결과	비고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당동 1000-2	교육연구시설 (지하1/지상1층)	○ 구내통신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설비	적합	증축 (2,228.73㎡)

6. 도시디자인과

건축주	주소	협의내용	검토결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신당동 1000-2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 사항	<p>○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학교시설로서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실시계획변경인가(의제) 가능함.</p> <p>○ 공사완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받을 것.</p>

7.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붙임 4]

대상명	소재지	건축주	연면적(㎡)	용도	검토결과
계명대학교 벽오고 문헌관 건물	달서구 신당동 1000-2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이사장	2,228.73㎡	교육연구 시설	동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헨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헨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평균사용수량} =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공중화장실 설치관련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①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 ①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2018. 9. 4.>
- 1의2. 삭제 <2018. 9. 4.>
2. 삭제 <2018. 9. 4.>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 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5의3.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5의4.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동과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추 둘 수 있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삭제 <2018. 9. 4.>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업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 해당시 작성)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층수		지하: 층/지상: 층				
규 모	부지 (m ²)	화장실 면적 (m ²)	일반		장애인등		어린이용		대변기유형		사용료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남											
	여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발신: (시설명) (관리자) (서명 또는 인)

- 배수설비 시공관련 유의사항 -

《공사관련사항》

- ① 배수설비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조경산업 제외), 전문공사업(상,하수도 면허(합류식의 경우 개인하수시설처리설계시공업도 가능))를 득한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27조)
- ② **충격에 강한 관자재 사용 (이중벽관 이상 시공 권장)**
 - ※ 건축허가 시 하수도 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승인 시 사진제출.
- ③ **도로(차도) 횡단 시 관로파손 및 도로침하방지를 위해 관보호콘크리트 타설**
 - ※ **관보호콘크리트 타설 공사 전, 중, 후 제출**
- ④ **대지 내에 개인 오수받이 설치 및 대지 외 존재 시 대지내로 이설할 것**
- ⑤ 배수설비 설치시 관로규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집수정)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고형물질이나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스크린 또는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⑥ 공공하수도 맨홀접속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근에 맨홀이 없을 경우 공공하수 관로를 코아드릴로 규격에 맞게 천공 후 새들분기관을 사용하여 수밀성있게 접합 하여야 하며, 시공 잔재물 준설 및 접속부 마감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 사진 제출 (**화이트 보드 등으로 위치 표기 후 사진 촬영**)



- 천공 후 연결시에는 지관(연결용 자재)를 사용하여 수밀성 유지



- ⑦ 기존 공공하수시설물 및 부대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 (건축물 공사중 측구 파손, 관 파손 등) 및 가시시설물 철거·정리할 것
- ⑧ 대지의 높이는 인접도로보다 높도록 하고, 도로면보다 낮은 지점(주차장 등)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할 것.

※ 하수관거에 접속하였을 경우 하수관거내부 접속부 CCTV촬영 후 제출

- CCTV 촬영 전 주변 건물 현황을 먼저 촬영 후 지하의 하수도를 촬영하여 제출하는 CCTV화면이 해당지역임을 입증 하여야 함.
- 배수설비 착공 전 단지 내 하수관과 공공하수관 상단간의 구배를 측량하여 인정 구배(1/100)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측량성과표와 배수설비 준공도면(1/200) 평면도 및 종단면도 제출

- ⑨ 옥상 우수 배수설비는 대지내 집수정에 집수후 관로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 ⑩ 기존 우·오수관 철거 후 원상복구
- ⑪ 배수설비 설치 시 우수전용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필히 가정우수(생활하수 포함)를 우수전용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우수관로 직관 공사 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로 정화조 폐쇄 신청 및 문의

- ⑫ 기름찌꺼기 배출시 그리스트랩(유지차단장치) 설치
- ⑬ 공개공지, 옥상 및 조경지의 배수는 대지 내 맨홀에 집수하여 공공하수관에 유입되도록 할 것

《준공 관련사항》

- ⑭ 배수설비 시공시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 접속부분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 준공 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준공검사시 배수설비관련도면 첨부)

⑮ 제출자료

- 준공검사신청서

※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시공자란에 상하수도면허 보유업체를 기재후 법인도장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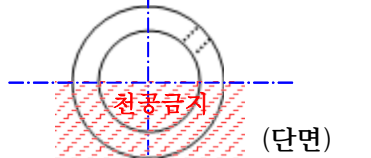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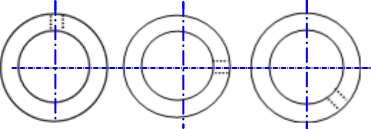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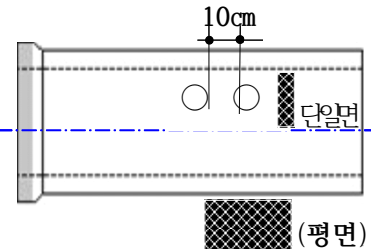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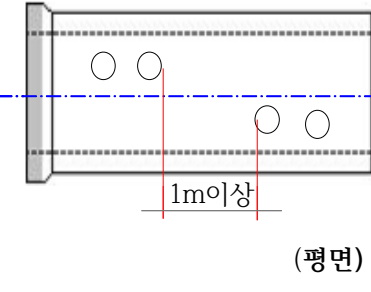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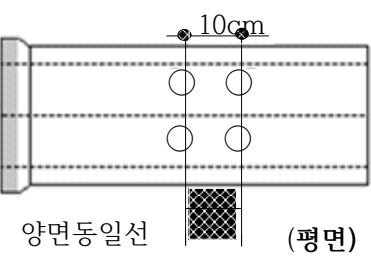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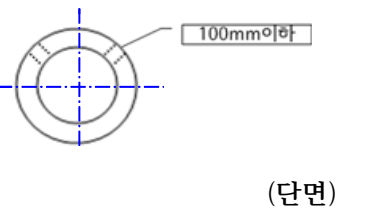
- 설치확인서
- 건설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수첩
- 사진대지 (공사 전, 중, 후 제출)
- 준공도면

※ 건축사(감리자)는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 및 관종, 관경 등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접속부 마감 미비등 조잡시공으로 재보완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도면과 시공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준공검사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관련사항》

- ⑯ 해당 대지에서부터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관을 개인배수설비이라고 하며, 해당 관은 대지 내의 건물주가 직접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 천공방법(본관이 흡관의 경우)

기 준	천 공	
<p>공공하수관거에 천공시 관저고에서 1/2 이상 지점 천공</p>		(○)
<p>※ 관 상단부 및 수평부, 하단부 천공금지</p>		(X)
<p>공공하수관거 한본에서 단일면에 2공까지만 천공 ※ 2공 천공시 천공간격은 10cm 이상 이격거리 유지</p>		
<p>관경400m이상 공공하수관거 한본에서 양면에 2공씩 천공시에는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 관경300mm인 경우 한 본에서 양면 천공금지</p>		(○)
<p>※ 400mm이상 공공하수관에서도 양면에 2공씩 천공 시에는 동일 선상에서는 천공금지</p>		
<p>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450mm인 경우 한본에서 양면 천공 시 연결관 관경 100mm이하 까지만 천공</p>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제14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보완 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구청장 . 군수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배출수량	m ³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 량	(m ³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붙임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달서-24-A-00091

발주자 (건축주)	학교법인계명대학교이사장	전화번호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용역업체	㈜하나기연	설계자 (연락처)	백상준 (02-562-3894)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 4층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2			
검토의견	적 합					
추가 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확인자	소속	디지털정보과	성명	정진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053-667-2474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 신축 건물의 통신서비스 연결을 위한 인입공사 시 모든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인입공사 신청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 (1855-0097)로 연락 바랍니다.

2024년 12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붙임 4]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갑 지)

건 물 명	계명대학교 벽오고문헌관 건물	건 축 주	학교법인계명대학교이사장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2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 / 지상 1층, 1개동 대지면적 1,624,233㎡ / 연면적 2,228.73㎡ / 건축면적 1,056.59㎡		
주된 용도	교육연구시설	동의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동의 [<input type="checkbox"/>]부동의
소방시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자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설비		
소방차 전용구역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된 대상에 한해 작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허가사항 변경) 동의를 요구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 년 11 월 22 일

대구강서소방서장

비 고

건축물이 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자료(의견서)를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 건축허가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 부동의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호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의 하는 이유와 검토자료(의견서)를 읍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허가과정에 첨부

용접 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용접작업의 위험성

▶ 용접작업 전

- ① 공사 관계인에게 통보(보고)
 -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
- ② 화재안전조치
 - 소화기,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방화포), 가연물 제거

▶ 용접작업 중

- ①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②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③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용접작업 후

- ①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 안전조치 사례(비교)

① 잘된 사례



- ① 방화포 사용 가연물 도포
- ② ③ 방화커튼형 비산방지조치

안전 Tip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불티의 특성

용융금속은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짐



② 잘못된 사례



- ① 일반 비닐사용 및 소화기 등 미배치